

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. 11. 1 선고 2018가단4102 판결 [건물등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2018. 11. 1.

주 문

1. 원고에게, 피고 B은 3/17 지분에 관하여, 나머지 피고들은 각 2/17 지분에 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, 경상남도 의령군 J 대 320m를 인도하라.
2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18. 9. 6.부터 위 제1항 기재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100,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,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 "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" 기재와 같다.
2. 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김윤석

별지